

스웨덴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 박사후 연구원)

■ 머리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스웨덴 경제는 장기 경제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무부 장관 막달레나 안데르손은 6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웨덴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6% 수준이 될 것이며, 실업률 역시 9~13.5%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¹⁾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몇 차례의 재정정책법안을 내놓았다. 재정정책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노동시장 안정, 특정 산업군 지원 등의 내용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korttidsarbete, short-time work allowance) 시행이 포함되었다.²⁾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정 비율 단축하였을 경우, 정부가 그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장기 경기침체 속에 기업들이 해고를 자제하며 경영과 인력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할 수 있게끔 돕는 제도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가된 내용을 함께 다룬다.

1) The Local(2020.6.18), "Sweden reports first signs of economic recovery after coronavirus crash", <https://www.thelocal.se/20200618/sweden-reports-first-positive-signs-of-economic-recovery-after-corona-crash>

2)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20), "Crisis package for Swedish businesses and jobs",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0/03/crisis-package-for-swedish-businesses-and-jobs/>

■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법(Lag(2013:948) om stöd vid korttidsarbete)³⁾은 예기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은 기업이 해고라는 극단적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지자 정부의 결정으로 2020년 4월 7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상 위기를 맞은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존 대비 40%, 60%, 80%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이때 근로자는 일정 부분 급여 감소(7.5%, 6%, 4%)를 부담하고,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와 고용주세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정부, 기업, 근로자 간의 기여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표 1>은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고용주(기업), 근로자, 정부가 기여하고 부담하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표 1>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따른 정부, 기업, 근로자의 부담 비율⁴⁾

등급	기존 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 비율(단축된 근로시간 비율)	고용주기여분	정부 기여분	근로자 급여 감소분
1	80% (20%)	1%	15%	4%
2	60% (40%)	4%	30%	6%
3	40% (60%)	7.5%	45%	7.5%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60% 단축했을 때(3등급, 40% 근로)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40%)에 고용주기여분(7.5%)을 더해 기존 인건비 대비 47.5%로 낮아지

3) Lag(2013:948), "om stöd vid korttidsarbete",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2013948-om-stod-vid-korttidsarbete_sfs-2013-948

4) Tillväxtverket, "Short-Time Work Allowance", <https://tillvaxtverket.se/english/short-time-work-allowance.html>

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임금(40%), 고용주기여분(7.5%), 정부기여분(45%)을 합한 기존 급여 대비 92.5%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기여분, 즉 정부의 지원금액은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비용 중 75%에 해당되는데, 정부는 단축된 근로시간의 인건비(100%-40%=60%)의 75%, 즉 45%를 지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2등급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의 인건비(100%-60%=40%)의 75%인 30.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의 기존 급여를 10,000SEK으로 가정하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60% 줄여서 40%만 일하게 될 경우, 기업은 변경된 임금 비용 40%(4,000SEK)를 부담하고 정부는 (10,000SEK(원 급여)-4,000SEK(기업부담)=6,000SEK)의 75%인 4,500SEK를 지원한다. 그리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주 기여금은 10,000SEK의 7.5%로 750SEK이다. 즉, 기업이 부담하는 총비용은 4,750SEK(급여(4,000SEK)+고용주기여금(750SEK))이고, 정부는 4,500SEK를 지원하여 근로자는 기존 급여의 7.5%를 감수하고 원 급여의 90%(9,250SEK)가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이용 시, 근로자의 급여 상한은 월 44,000SEK(한화 약 567만 원)이다.

이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스웨덴 내 등록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고용주세(고용주기여금)를 납부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어 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조건 및 근로시간 단축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 국영기업, 유한회사, 비영리단체 및 재단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 및 기타 정부기관 소속단체, 1인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단체협약에 속해있지 않은 기업이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장 내 근로자 중 최소 70%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고 참여한다는 내용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기업 중에서 파산 혹은 구조조정 중인 기업, 배당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기업 등은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기업은 이 제도를 최대 6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 상황에 따라 3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은 기업혁신부 산하의 경제·지역성장청(Tillväxtverket)이며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현재 경영상 위기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경제·지역성장청에 증명해야 한다. 지원제도 신청 기업은 경제·지역성장청에 의해 적합 여부를 평가받는데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예를 들어, 근무 교대의 방식 변경, 비필수 인력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해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제도 승인 3개월 이전부터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신규로 채용되어 2020년부터 일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없다. 한편 2020년에 한해 고용주 및 가족 직원도 기본 요건 충족 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 임시직, 수습직 근로자도 핵심인력 여부, 고용주의 인건비 절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하다.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기업은 경제·지역 성장청으로부터 지원금액을 받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가 받게 될 월급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인원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근로시간을 20%, 40%, 60% 단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의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경우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일정 비율로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일도 가능한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 되었을 때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육아휴직 혹은 질병휴직을 일부 사용하여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 경제·지역성장청은 육아휴직을 부분 사용(25% 사용)하여 전일제 근로 대비 75%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예로 들었다. 근로자 A는 전일제 근로 시에 월급을 40,000SEK 받았으나 부분 육아휴직(25%)을 택해 근로시간은 주 30시간(75%)이 되었고, 급여는 평상시 월급의 3/4인 30,000SEK가 되었다. 한편 경영상 위기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 A의 근로시간을 60% 감축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A의 주당 근로시간은 30시간에서 60%(18시간) 감축된 12시간이 되었다. 지원금 및 월급 역시 현재 고용상태상 월급인 30,000SEK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스웨덴 정부는 5~7월에 한해 기존 근로시간 단축 비율 범위를 8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4월 14일에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6월 1일자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제·지역성장청은 5월부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0%까지 단축했던 기업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기존 3개의 등급(20%, 40%, 60% 단축)에 한 개의 등급(80% 단축)이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추가된 4등급 근로시간 및 정부, 기업, 근로자의 부담 비율

등급	기존 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 비율(단축된 근로시간 비율)	고용주 기여분	정부 기여분	근로자 급여 감소분
4	20% (80%)	12%	60%	8%

한편 스웨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전, 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에 여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시행을 발표한 이후, 정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 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다. 재무장관 막달레나 안데르손은 지난 5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원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출 금액을 24억 SEK(한화 약 3,093억 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4월 7일 이후 첫 주에만 신청 건수가 3만여 건이 넘는 등 기업들의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예상 지출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날 장관이 예상한 지출금액은 950억 SEK(한화 약 12조 2,417억 원)로 지난 4월 중순에 예상했던 500억 SEK(한화 약 6조 4,430억 원)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금액이다. 한편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이 추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55만 명 가량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⁵⁾

5) Svt(2020.5.14), "Korttidspermitteringar dyrare än regeringen trodde - kan kosta 95 miljarder", <https://www.svt.se/nyheter/inrikes/korttidspermitteringar-dyrare-an-regeringen-trodde>

이 밖에도 지원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기업들이 지원제도를 신청한 상태로 근로자들에게 전일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제도 수혜 대상 기업 기준의 모호성을 근거로 여러 기업이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담당 기관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6월 1일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관련 개정 법안에서 경제·지역성장청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⁶⁾ 경제·지역성장청은 지원을 받는 기업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는 방문과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제·지역성장청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재정정책법안을 통해 경제·지역성장청에 100여 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맺음말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정부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무분별한 해고를 자제시켜 노동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해당 제도는 정부, 기업, 근로자의 기여분을 세분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자에게 돌아갈 재정적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에서 눈여겨볼 다른 부분은 단체협약의 중요성이다. 앞서 다뤘듯, 단체협약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도 직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내용이 이미 단체협약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신속하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 해당 제도 담당 기관인 경제·지역성장청 역시 기업들로 하여금 단체협약에 속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경제·지역성장청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관련 웹페이지를 살펴

6) Regeringskansliet(2020.4.20), “En tillfällig förstärkning av stödet vid korttidsarbete”,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departementsserien-och-promemorior/2020/04/en-tillfallig-forstarkning-av-stodet-vid-korttidsarbete/>

보면 기업이 어떻게 단체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제공되어 있다.⁷⁾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스웨덴의 경기 침체 및 실업률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한 채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근로 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우선 올 한 해 동안 시행될 예정이지만 차후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KLI**

7) Tillvaxtverket, “Avtal med arbetstagarna”, <https://tillvaxtverket.se/om-tillvaxtverket/information-och-stod-kring-coronakrisen/korttidsarbete/avtal-med-arbetstagarna.html>